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432
----------	------

2026년 3월 5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2월 9일, 최민규 의원(찬성자 23명)
나.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6년 3월 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민규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일시적인 정책 대응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를 중심으로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제7조의 제목을 (하수관로 준설 등)에서 (하수관로 점검 등)으로 변경함(안 제7조 제목).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하고, 그 외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도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3항).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맨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를 중심으로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표 1] 산구조문 대비표(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7조(하수관로 점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맨홀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재해 위험지구가 아닌 경우에도 침수의 위험이 있거나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서울시 관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 서울시는 지난 '22년 강남역 일대 침수 사고 당시 하수도 맨홀 뚜껑 이탈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했었던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를 위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¹⁾해 오고 있음.

1) 맨홀추락방지시설 표준(안) 검토 보고, 물재생계획과-32057, 2022.12.1.

- '25.12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맨홀 291,684개 중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된 개소는 총 59,737개이고, 아래 [표]와 같이 매년 설치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표 2]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25.12월 기준)

구분	설치 실적					전체 맨홀현황
	소계	'22년	'23년	'24년	'25년	
25개 자치구	59,737	6,727	8,075	15,106	29,829	291,684

- 특히, 본 개정안의 대상지역인 내수재해 위험지구²⁾(총 138개소)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22~'25)을 통해 설치를 완료하였고,

[표 3]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 추진현황

구분	1단계('22~'25년)	2단계('26년)
설치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재해 위험(40개소) 및 관리지구(98개소) ◦저지대 등 일반지역 ※ 설치대상 : 53,23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재해 위험(45개소) 및 관리지구(30개소) ◦침수위험지구(1개소)1) ※ 설치대상 : 10,028개소

- '26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에서는 하천재해 위험지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자치구별 취약지역 추가 조사를 통해 저지대 일반지역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범위를 넓혀갈 계획³⁾임.

■ 주요골자별 검토의견

- 안 제7조 제목은 '하수관로 준설 등'을 '하수관로 점검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2) 극한 강우 시 빗물 처리 시설 용량 초과나 고장으로 도시 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 세부수립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89호, 2024.11.21.)에 따라 선정함.

3) 2026년 맨홀추락방지시설 사업계획 보고, 물재생계획과-13215, 2025.8.7.

- “준설”이 하수관로 내 퇴적물 제거 등 기능 유지에 국한된 개념이라면, “점검”은 하수관로의 구조적 안전성과 맨홀 등 부속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포괄적 개념인바, 하수관로 관리의 방점을 ‘기능 유지’에서 ‘시민 안전’으로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판단됨.
- 특히, 안 제7조제3항에서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제목 변경을 통해 하수관로 관리의 범위를 부속 안전시설물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하는 것은 조례 내 조문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 다음으로, 안 제7조제3항의 신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4)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상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맨홀에 대하여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외 침수 우려 지역 등에도 필요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22년 강남역 일대 맨홀 사고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집중호우 시 수압에 의한 맨홀 뚜껑 이탈 사고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고,
- 서울시가 이미 '22년부터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선제적

4)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 다만,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내구성과 안전 성능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미비할 경우 실제 수압 발생 시 시설이 파손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서울시 차원의 표준 규격과 성능 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자치구가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시설의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민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32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최민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창진, 민병주, 박성연, 박철성, 윤기섭, 윤종복, 이성배, 이종환, 임춘대, 장태용, 허·훈, 홍국표 의원(23명)

1. 제안이유

-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일시적인 정책 대응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중심으로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제7조의 제목을 (하수관로 준설 등)에서 (하수관로 점검 등)으로 변경함(안 제7조 제목).
- 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외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도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준설”을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관리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맨홀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재해 위험지구가 아닌 경우에도 침수의 위험이 있거나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하수관로 <u>준설</u> 등) ①·② (생 략) <u><신 설></u>	제7조(하수관로 <u>점검</u>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청은 「자연재해대책 <u>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자 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 내수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맨홀에는 추락방지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 재해 위험지구가 아닌 경우에도 침수의 위험이 있거나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 다.</u>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관로의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맨홀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내수재해 위험지구가 아닌 경우에도 침수 위험이 있거나 침수발생지역에 대해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서울특별시 관련부서(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확인 결과 서울특별시에서 연도별 맨홀 정비 및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예산을 편성하여 자치구에 재배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시행하고 있는 사업1)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권 봉 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예시1. 하수맨홀 안전시설 설치 확대사업 추진계획(2025.4.4., 용산구)

- 내수재해 위험지구 주철맨홀 추락방지시설 우선 설치
 - 주철 맨홀뚜껑 노후 상태에 따른 설치형태 구분
 - 상태 양호 : 부착형 추락방지시설
 - 상태 불량 : 일체형 추락방지시설
- 관내 위험 보도용 콘크리트 맨홀 전체 정비(추락방지시설 포함)

예시2. 종로구, 침수우려지역 모든 맨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2025.3.19., 문화경제)